

2022년 제20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

[1호 안건: 미추홀구 송의동 전도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(구조)]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 건축과	심의일자	2022. 12. 27.
건축종별	[<input type="checkbox"/>] 신축, [<input type="checkbox"/>] 증축, [<input type="checkbox"/>] 대수선, [<input type="checkbox"/>] 기타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전도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		

대지현황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		
	109-119외 1036필지	관련지번	
	대지면적 53,471.3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제2종일반주거지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11,251.2642㎡	건폐율 21.04%	층수 지하 : 2층/ 지상 : 29층
	주용도 공동주택(아파트)	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 18동
	최고높이 82.05m	용적률 299.36%	연면적 합계 228,246.8585㎡

	구 분	심의결과
심의내용	(구조분야)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풍동실험 시 적용한 기본풍속을 확인하고, 기준 풍하중과 풍동실험의 풍하중을 비교하여 구조설계를 검토하기 바람 ○ 지하수위는 구조설계 시 고려한 설계 수위로 정리하기 바람 ○ 지하 외벽 설계 시 정적토압 하중계수(활하중, 수압, 토압)를 검토하여 배근 및 단면 확인하기 바람 ○ 내구성 확보 계획인 도료의 시험성적서 시험결과는 강도상향에 대한 내용으로 콘크리트 적용에 대한 세부사항(성능입증)을 확인하기 바람 ○ 구조설계방법 및 적용기준 등 표기와 적용기준을 적합하게 기술하기 바람 ○ 구조분야 관련 심의 결과는 착공 전 구조 심의위원(김현아위원, 김은주위원, 김창혁위원)에게 확인받기 바람
	(토목분야)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전검토 조치계획서-38 그라우팅에 대한 의견을 추가 보완 및 채택 사유 명확히 하여 심의위원(김상호위원)에게 확인 받을 것
	(행정)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전검토의견 반영할 것 ○ 심의내용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며,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검토·확인하시기 바람 ○ 시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건축계획 및 구조안전 관련 기술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므로, 건축 인·허가 때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

	<p>[<input type="checkbox"/>] 원안 의결 [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] 조건부 의결 [<input type="checkbox"/>] 재검토 의결 [<input type="checkbox"/>] 부결</p> <p>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
심의결과	

2022년 제20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

[2호 안건: 서구 검단지구 AA20블록 공동주택 신축(구조)]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 건축과	심의일자	2022. 12. 27.
건축종별	[<input type="radio"/>] 신축, [<input type="checkbox"/>] 증축, [<input type="checkbox"/>] 대수선, [<input type="checkbox"/>] 기타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대방개발기업 주식회사		
대지현황	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		
	인천검단지구 AA20블록	관련지번	
	대지면적 38,082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제3종일반주거지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6,932.6949㎡	건폐율 18.2%	층수 지하 : 3층/ 지상 : 20층
	주용도 공동주택(아파트)	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 11동
	최고높이 57.6m	용적률 194.6%	연면적 합계 140,100.0133㎡
심의내용	구 분	심의결과	
	(구조분야)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설계에 적용된 기준은 2018년 기준이므로 최신 기준을 적용하여 구조검토하고, 명확히 정리하기 바람(해당연도 표기, 적용기준 정리) ○ 개수로 표기된 짧은 벽체의 코너근 포함여부를 일람표에 명확히 정리하기 바람 ○ 109동 등 다이아프레임 불연속에 따른 보강안으로 철근을 추가 하였으나, 슬래브 두께가 150mm로 취약부가 되므로 두께 200mm 상향에 대해 검토 반영하기 바람 	
	(행정)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전검토의견 반영할 것 ○ 심의내용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며,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검토·확인하시기 바람 ○ 시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건축계획 및 구조안전 관련 기술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므로, 건축 인·허가 때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 	
심의결과	<input type="checkbox"/> 원안 의결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조건부 의결 <input type="checkbox"/> 재검토 의결 <input type="checkbox"/>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